

이 보도자료는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고, 공개되는 범죄사실은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
광주지방검찰청

전문공보관 인권보호관 이정봉
전화 062-231-4332 / 팩스 0502-193-7661

보도자료
2021. 7. 15.(목)

제 목 **검사 사칭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조직원 2명 구속 기소**

공소제기 후 공개의 요건 및 범위

- 피고인, 죄명, 공소사실 요지, 공소제기 일시, 공소제기 방식, 수사경위, 수사상황(제11조 제1항)
 - 공판에서 현출되기 전이라도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(제11조 제2항 제3호) 제7조 제2호 내지 제6호의 공개금지정보
- ※ 2021. 7. 14. 개최된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배포되는 자료임

- 2021. 7. 8. 「대검 반부패·강력부 보이스피싱 범죄 강력 대응 지시」 관련임
- 2021. 7. 8.(목) 광주지방검찰청 반부패·강력수사부(부장검사 박진성)는 중국 소재 **보이스피싱 범죄단체**에 가입한 뒤 **검사, 검찰수사관을 사칭**하며 국내 피해자들을 상대로 사기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 A, B를 각 구속 기소하였음
- 피고인들이 가입한 범죄단체는 중국 국적 동포를 총책으로 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으로, **범죄수사를 담당하는 검사, 수사관을 사칭**하며 “계좌가 범행에 연루되었다”라고 거짓말하여 약 7,000만 원 상당을 편취하거나 미수에 그침
 - 본건은 최초 피고인들이 범행 부인하여 피해금액 특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사기미수 등으로 송치된 사안이나, 검찰 조사 과정에서 **총책 특정 후 관련 공범 조사 및 면밀한 법리 검토를 통해 조직의 전모를 규명하고, 피해금액을 밝혀 A, B를 각각 구속 기소**
 - 또한 피고인 A가 보이스피싱 공범 재판에서 허위 증언한 사실 확인하여 위증으로 추가 인지, **사법질서 교란행위에 적극 대처**
- 검찰은 피고인들이 죄질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고, 향후에도 **검사·수사관 등 수사기관 사칭 범행은 끝까지 추적하여 서민을 울리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엄정 대응**하겠음

I 피고인 및 공소사실 요지

① 피고인

- A (28세,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관리책), 구속 기소
- B (29세,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콜센터 상담원), 구속 기소

② 공소사실 요지

- 피고인 A는 '17. 3.~10.경, 피고인 B는 '17. 8.~10.경 중국 강소성 소재 보이스 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한 후 국내 피해자들을 상대로 여러 명의 검사, 검찰 수사관을 사칭하며, 먼저 수사관을 사칭하는 조직원이 전화를 걸어 “당신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다”라고 거짓말한 뒤 검사 사칭 조직원에게 전화를 연결해주고, 검사 사칭 조직원은 “현재 당신에 대해 수사 중이다, 범죄 관련성을 확인하기 위해 현금을 출금하여 금감원 직원에게 전달해라”고 거짓말하여 7,000만 원 상당 편취하거나 미수에 그쳐 [범죄단체가입·활동, 사기, 사기미수]
- 피고인 A는 '21. 5.경 보이스피싱 공범 재판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‘보이스피싱 범행을 한 사실이 없다’라고 허위 증언하여 [위증]

II 주요 수사 경과

- '21. 5. 21. 별건 보이스피싱 사기 사건 조사 중 피고인들의 보이스피싱 범행 가담 사실 확인
※ 피고인들의 본건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가입 사실 등에 대하여 '20. 12. 타 청 혐의없음 처분 사실 확인, 사건 재기하여 이송받아 재수사 착수
- '21. 6. 24. 각 구속(6. 22. 각 체포)
- '21. 7. 5. 피고인 A의 위증 혐의 추가 인지
- '21. 7. 8. 각 구속 기소

III 향후 계획

- 피고인들이 죄질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고, 향후에도 검사·수사관 등 수사기관 사칭 범행은 끝까지 추적하여 서민을 울리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엄정 대응하겠음 ☑